

명예교수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.
2. 본교에서 총장을 재임한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.

[전문개정 2018.11.17.]

제3조 (추대 절차) ① 명예교수는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추대를 제청한다. <개정 2006.12.19>

② 삭제 <2011. 1. 28.>

③ 삭제 <2006. 12. 19>

제4조 (구비서류) 학과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피 추천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서
3. 명예교수 추천서

제5조 (예우) ① 명예교수에게는 명예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, 신분증을 발급하며,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.

②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 의식에서 재직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70세까지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, 강의위촉은 전공필수를 제외한 과목으로 주당 1과목(3시간) 이내로 한다. 단, 학부 예능계열 전공실기 과목의 경우,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지도했던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 중에서 최대 3명(3시간)까지는 실기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7>

④ 강의 위촉을 받은 명예교수에게 공동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⑤ 소천 시 학교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 (명예교수 심의위원회) ①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교수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같음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추대취소)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추대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0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<개정 2006. 12. 19., 2011. 1. 28.>
- ③ (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명예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본다.
- ④ (처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명예교수에 대한 강의위촉제한은 2005학년도까지 유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